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58
----------	-----

2019년 6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이정인 의원(찬성자 15명)
- 나. 제안일 : 2019년 3월 29일
- 다. 회부일 : 2019년 4월 3일
- 라. 상정일 :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4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정인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의 제명 및 내용 중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함(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로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국가정보화 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2019. 4. 8. ~ 2019. 4. 15)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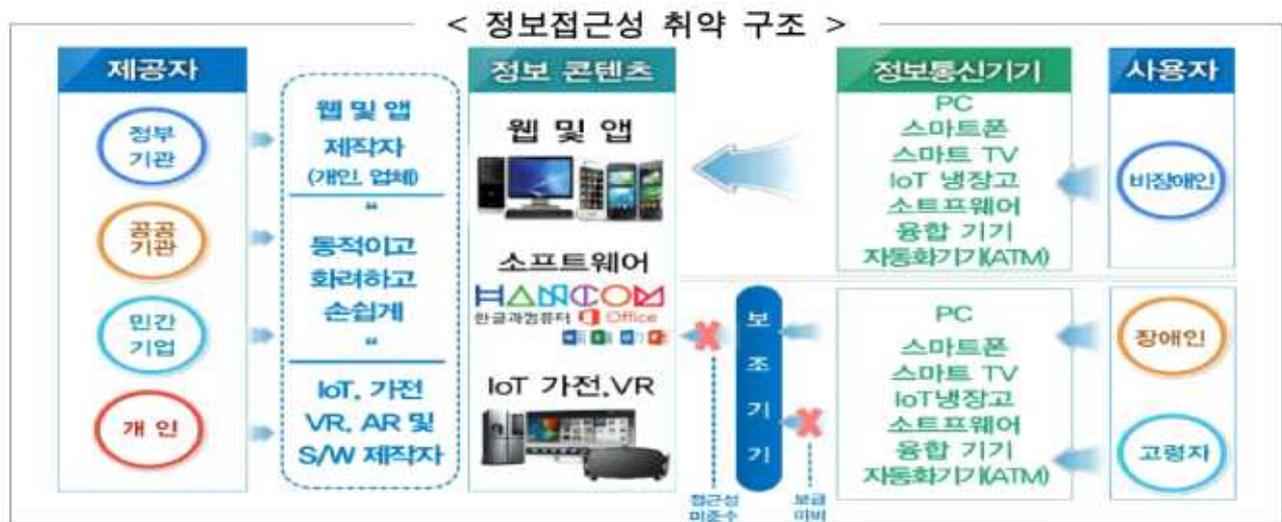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및 내용 중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개정하고(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관련조례가 전부개정(「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조례안 정비 사항>

조문	현행	개정안	비고
제명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상위 법령(「국가정보화 기본법」) 반영
제1조	-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제2조~ 제11조	- 웹접근성	- 정보접근성	- 상위 법령(「국가정보화 기본법」) 반영
제8조 제1항	-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	→ - 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	- 위원회 명칭 변경
제8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 기존 근거 조례 변경 사항 반영
제8조 제2항	- 정보화전략위원회	- 스마트도시위원회	
제8조 제2항	-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	- 정보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스마트도시위원회	- 정보접근성 전문가 추가
제8조 제2항	-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	- 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	- 위원회 명칭 변경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1항)의 개정1)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등이 장애인·고령인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 수단을 인터넷에서 정보통신망으로 확대하고, 접근대상을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확대함으로써 웹접근성이라는 용어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2)까지 포함하지 못하므로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성까지 포함되는 ‘정보접근성’이라는 광의의 의미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 ※ ‘웹접근성’이란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
-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정보접근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³⁾ 제2조제1호에서 ‘정보 접근’이란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신체 및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 없이 손쉽게 활용

1) 법률 제15369호, 일부개정 2018.2.21., 시행 2019.2.22.

2) “소프트웨어 접근성”이란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으로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 제1항).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타법개정·시행 2017. 8. 24.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고, 2018년도 부처별 정보격차 해소사업 시행계획 주요내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접근성 표준화 및 조사연구, 웹사이트·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웹 접근성 개선 지원 및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등을 정보접근성 제고 사업내용을 통틀어서 “정보접근성 제고”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⁴⁾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모바일앱 사용 등에 있어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등에서 정보격차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부 내용 검토

1) ‘웹접근성’에서 ‘정보접근성’으로의 범위 확대(조례 제명 및 안 제2조 ~ 안 제11조)

- 본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현행 조례(「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로 제정 및 운영해 왔으며,

- 금번 개정 조례안의 제명변경은 상위법령(「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접근성까지 포함하는 ‘정보접근성’이라는 광의의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5)와 제32조6)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

4) 김유향·김나정,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입법·정책보고서 제10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11월, 17면 참조.

5)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었음.

- 최근 장애인, 노령자 등으로 분류되는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웹사이트 이용 등 웹접근성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스마트폰 보유율이나 스마트폰 활용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며,
- 정보이용 시설의 확대 및 무료교육과 같은 지속적인 정보화 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화 선도 계층과의 정보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장애인·장노년층·농어민·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관한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정보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은 72.6%로 전년(70.1%) 대비 2.5% 상승하였으나 일반국민 인터넷 이용률(91.5%) 대비 18.9% 낮은 수준이고, 정보 취약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71.3%로 전년(68.7%) 대비 2.6% 상승하였으나 일반국민 스마트폰 보유율(91.0%) 대비 19.7% 낮은 수준임.
-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조사팀의 ‘2018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인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최근 3개월 이내 이용현황을 연령대로 보면 30대는 87.2%, 40대는 76.2%, 50대는 51%이지만 60대는 18.7%, 70대는 6.3%로 60대 이상에서는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짐을 알 수 있음.

-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웹접근성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접근성까지 포함하는 용어인 ‘정보접근성’으로의 보완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조례개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안 제4조제2항 중 조례 명칭과 기본계획은 그 명칭이 변경(19. 3. 28.)되었는바, 이에 대한 수정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u>정보화 기본 조례</u> 」 제5조의 서울특별시 <u>정보화기본계획</u> 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u>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u> 」 제5조의 서울특별시 <u>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u> 과 연계되도록 한다.

※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도 동 조항에 대해 수정의견을 개진함.

- 또한, 안 제6조제4호의 경우는 동 조례가 일부개정(19.5.16)으로 현행 제6조제4호가 제5호7)로 이미 개정되었는바, 관련조문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
 - 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 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 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조(추진사업) 1. 3. 생략 4. 그 밖의 정보취약계층의 <u>웹접근성</u>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추진사업) 1. 4. 생략 5. 그 밖의 정보취약계층의 <u>정보접근성</u>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정보접근성’전문가 위원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웹접근성’이란 용어를 ‘정보접근성’으로 개정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웹접근성위원회 ⇒ 정보접근성위원회)하려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좀 더 넓은 의미의 ‘정보접근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으나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 →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

※ 성명 외의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음(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8판)」, 89면 참조).

정비 원칙	허용
대한v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v대학교v사범v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 안 제8조제2항은 관련조례가 전부개정(「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되어⁸⁾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구성 시 정보접근성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정보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8) 서울특별시조례 제7026호, 전부개정·시행 2019. 3. 28.

- 현재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은 2019년 3월 웹접근성 전문가 1명을 추가 위촉하여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8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위원회를 정보접근성위원회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짐.
- ※ '19년 5월 7일자 기준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1명, 위촉직 20명('19. 3월 웹접근성 전문가 추가 위촉포함)으로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제3항9)에 따르면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학계, 기업, 민간단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고,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 구성됨.
- 또한, 금번 조례의 개정은 웹접근성 및 정보접근성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8조(위원회) ① ----- 정 보접근성 ----- ----- 서울특별시정 보접근성위원회-----. 1. 2. (생략) 3. 그 밖에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 서울특별시정보접 근성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 정 보접근성 ----- ----- 서울특별시 정 보접근성위원회-----. 1. 2. (생략) 3. 그 밖에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 서울특별시 정보접 근성위원회-----

- 9)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한다.
1. 위촉직 위원 : 학계, 기업, 민간단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p>「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스마트도시위원회-----정보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p>	<p>「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스마트도시위원회-----정보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p>
---	--

- 다만,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참석율('17년 61.6% ⇒ '18년 57.5%)이 저조한바, 참석률 제고를 위한 독려 방안과 함께 효과적인 위원회 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스마트도시위원회(舊 정보화전략위원회) 개최 및 참석현황

○ 2019년 : 1회

연번	개최일자	회의안건	참석인원(명)	참석률(%)
계	1회		15	
1	'19.3.29	· 2019년도 웹접근성수준향상 시행계획 심의 · 자유토론(디지털재단 발전방향, 기업참여 스마트시티 사업 활성화)	15/21	71.4%

○ 2018년 : 4회

연번	개최일자	회의안건	참석인원(명)	참석률(%)
계	4회		57	
4	'18.12.21	· 신규위원 위촉식, ·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보고	17	70.8%
3	'18.7.18	·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자문	11	47.8%
2	'18.4.30	· 스마트시티 서울 전략 자문	12	46.2%
1	'18.3.30 ※전자회의	· 2017년도 정보화시행계획 심의 · 2017년도 웹접근성수준향상 시행계획 심의	17	65.3%

○ 2017년 : 2회

연번	개최일자	회의안건	참석인원(명)	참석률(%)
계	2회		32	
2	'17.12.20 ※전자회의	·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 신규과제 심의	18	69.2%
1	'17.3.29	· 2017년도 정보화시행계획 심의 · 2017년도 웹접근성수준향상 시행계획 심의 · 서울 디지털 서밋 2017 추진방향 자문	14	54%

다. 종합 의견

- 상위법령(「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접근성까지 포함하는 ‘정보접근성’이라는 광의의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것이며, 위원회 구성 시 웹접근성 및 정보접근성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5.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개정('19.3.28)되었고, 동 조례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제4호가 제5호로 개정('19.5.16)되어있는바 이를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개정되었고, 계획명이 ‘정보화기본계획’에서 ‘스마트 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를 반영함(안 제4조 제2항).
- 안 제6조 중 제4호가 제5호로 개정되었는바 이를 반영함(안 제6조).
- ‘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로 띄어쓰기를 함(안 제8조).

6.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558
----------	------------

제안연월일 : 2019년 6월 14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개정('19.3.28)되었고, 동 조례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제4호가 제5호로 개정('19.5.16)되어있는바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개정되었고, 계획명이 '정보화기본계획'에서 '스마트 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를 반영함(안 제4조 제2항).
- 안 제6조 중 제4호가 제5호로 개정되었는바 이를 반영함(안 제6조).
- '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로 띄어쓰기를 함(안 제8조).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 조례」”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정보화기본계획”을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하며,

안 제6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를 각각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u>정보화 기본조례</u>」 제5조의 서울특별시 <u>정보화기본계획</u>과 연계되도록 한다.</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u>정보화 기본조례</u>」 제5조의 서울특별시 <u>정보화기본계획</u>과 연계되도록 한다.</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u>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u>」 제5조의 서울특별시 <u>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u>과 연계되도록 한다.</p>
<p>제6조(추진사업)</p> <p>1. 4. 생략</p> <p>5. 그 밖의 정보취약계층의 <u>웹접근성</u>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6조(추진사업)</p> <p>1. 3. 생략</p> <p>4. 그 밖의 정보취약계층의 <u>웹접근성</u>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6조(추진사업)</p> <p>1. 4. 생략</p> <p>5. 그 밖의 정보취약계층의 <u>정보접근성</u>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u>웹접근성</u>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u>를 둔다.</p> <p>1.2. (생략)</p> <p>3. 그 밖에 <u>웹접근성</u>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u>정보접근성</u>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u>를 둔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u>정보접근성</u>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u>정보접근성</u>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u>를 둔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u>정보접근성</u>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정보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정보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로 본다.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을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한다.

제3조 중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5호 중 “웹접근성”을 각각 “정보접근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서울특별시 정보화 조례」”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정보화기본계획”을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웹접근성”을 각각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웹접근성”을 각각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웹접근성”을 각각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스마트도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를 “정보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로,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웹접근성”을 각각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웹접근성”을 각각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제11조 중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u>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u>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u>웹접근성</u>"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책무) 서울특별시는 정보취약계층의 <u>웹접근성</u>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u>웹접근성</u> 향상을</p>	<p>제1조(목적) ----- <u>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u> ----- ----- -----.</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정보접근성</u>"이란 <u>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u>----- -----.</p> <p>제3조(책무) ----- - <u>정보접근성</u> ----- ----- -----.</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 ----- <u>정보접근성</u> -----</p>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4. (생략)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웹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웹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 스마트도시 및 기본계획-----.

③ -----
-----.

1. (현행과 같음)

2. ----- 정보접근성 -----

3.~4. (현행과 같음)

5. ----- 정보접근성 -----

제5조(실태조사) ① -----
----- 정보접근성 -----
----- 정보접근성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정보접근성 -----
-----.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생략)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를 둔다.

제6조(추진사업) -----
-- 정보접근성 -----
-----.

1. ----- 정보접근성 -----

2. ----- 정보접근성 -----

3. ----- 정보접근성 -----
4. (현행과 같음)
5. ----- 정보접근성 -----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
----- 정보접근성 -----

-----.

② ----- 정보접근성 -----

-----.

제8조(위원회) ① -----
--- 정보접근성 -----

-----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

1.~2. (생략)

3. 그 밖에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로 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웹접근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웹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 정보접근성 -----

② -----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스마트도시위원회-----
----- 정보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

제9조(협력체계 구축) -----
----- 정보접근성 -----
----- 정보접근성 -----
-----.

제10조(위탁) ① -----
정보접근성 -----

----- 정보접근성 -----
-----.

②·③ (생략)

제11조(포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을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포상) -----
정보접근성 -----

-----.